

# 예산총칙

2021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01,645,345	21,049,360
일반회계	667,556,708	20,026,701
특별회계	34,088,637	1,022,659
공기업특별회계	16,642,402	499,272
상수도사업관리	16,642,402	499,272
기타특별회계	17,446,235	523,387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11,772,209	353,166
변산해수욕장조성사업	2,319,215	69,576
부안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9,306	579
부안댐상수원관리특별회계	1,729,533	51,88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31,518	30,946
주차장관리	208,060	6,242
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	366,394	10,992

제 2 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서"와 같다.

제 3 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의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의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5 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5,686,14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의 사고이월사업은 별첨 "사고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7 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의 지방채 차입액은 "26,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